

구미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7. 12.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도로명주소의 변경·사용·관리 및 시설물 설치·유지관리, 활용,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로명주소의 적법성과 행정지원의 적정성 및 시민 생활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로명 변경 절차와 고지·고시 내용
 - 해당 도로명주소 사용자 1/5 이상이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새주소위원회의 심의 후 1/2 이상의 동의를 거쳐 변경토록 함 (안 제3조 및 제4조)
 - 도로명주소 고지·고시 시 홍보효과 제고를 위해 안내사항을 추가하고 방문고지를 우선하여 추진토록 함(안 제5조)
- 자체 제작·설치하는 건물번호판의 규격 등
 -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설치하거나 옥외광고물에 포함시키는 경우의 최소 규격을 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 시장은 건물번호판 재교부신청을 받은 경우 설치관련 정보를 안내토록 규정(안 제8조)
- 도시개발지역의 도로명시설의 설치방법 등
 - 도시개발사업자는 준공일 90일 전까지 도로명주소를 신청하도록 하고 시장은 이를 사업 승인 시 안내토록 함 (안 제9조)

- 시장은 도로명부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도로명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통지토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등에 관한 사항
 - 관련사업에서도 도로명주소를 통일적으로 사용하도록 함(안 제11조)
 - 도로명 관련 자료의 통보 및 도로명기본도의 추가 구축사항 규정(안 제12조 및 제13조)
 - 도로명 부여사유를 정리하도록 규정함(안 제14조)
-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도로명시설 일제조사 결과 훼손·망실된 건물번호판은 재교부 신청하도록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안내함(안 제15조)
 - 도로명시설의 위탁관리 대상자, 절차, 지도 감독 규정(안 제16조 내지 제18조)
- 도로명시설의 광고사업자 선정방법 등
 - 광고사업자 선정 관련 공고방법, 평가항목, 배점기준을 규정(안 제19조 내지 제21조)
-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 등
 - 도로명주소의 홍보·교육, 생활화 시책 추진에 관한 내용을 규정(안 제22조 및 제23조)
- 새주소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 새주소위원회의 구성, 기능,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4조 내지 제32조)
 -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15인 이내로 구성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가능

3. 참고사항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 시·군·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행정자치부 표준안
행정자치부 새주소정책팀-1248(2007. 8. 9)

구미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도로명사업 등에 관하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도로명의 변경

제3조(도로명의 변경 요건) 영 제7조제5항에 따라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로명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명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경과한 후 도로명주소의 활용도와 편리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도로명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경과한 후 도로명 변경 신청일 현재 해당 도로구간의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법인·단체의 대표자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점유자로서 20세 이상의 자(이하 “주소사용자”라 한다. 이하 같다)의 5분의 1 이상이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제4조(도로명의 변경) ①제3조제2호에 따라 도로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명 변경신청을 받은 날 또는 제3조제1호의 사유로 도로명을 변경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자 이외의 자도 도로명 변경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의견 제출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도로의 현행 명칭과 희망하는 명칭(복수안)
2. 해당 도로명의 변경 추진사유
3. 도로명 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자의 범위, 의견 제출의 방법 및 기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명의 변경 신청을 받거나 변경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구미시새주소위원회에 상정·심의하여야 한다.

1. 변경 신청된 도로명의 연혁, 제정·변경추진 사유
2. 변경 신청된 도로구간의 건물번호수 및 주소사용자 현황
3. 도로명 변경에 따른 도로명시설의 설치비용 및 조달방법
4. 도로명 변경에 대한 주민 및 시장의 의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심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의결과와 변경절차(변경하기로 심의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시보·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제3조제2호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대표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제3항의 심의결과가 도로명을 변경하기로 한 경우에는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에 대하여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 도로명을 변경해야 한다. 다만,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그 결과를 공고한 날로부터 31일 이후 40일 이내에 신청인의 대표자에게 통지하고 시보·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제3조제2호의 경우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의 신청이 있고, 제3항의 심의결과가 도로명 변경 희망안의 1순위 도로명으로 변경하기

로 한 경우에는 제5항에 규정된 주소사용자 2분의 1 이상에 대한 서면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⑦시장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도로명 변경에 대한 동의를 얻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산자료를 정리하고,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변경된 도로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 ①시장은 영 제21조 및 제4조제5항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거나 변경하고 건축물 등의 소유자·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를 고지·고시하는 경우에는 영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이미 부여된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변경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고지 받은 사항에 대한 정정요청에 관한 사항
3. 해당 도로명을 부여한 사유
4. 법적주소의 전환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고지는 우선적으로 통·리장을 통하여 방문고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통·리장을 통한 방문고지를 2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물을 통한 서면고지를 실시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2항에 따른 우편물을 통한 서면고지를 2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고지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

제6조(건물번호판의 규격) ①영 제9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의 그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로, 노(路)에 접한 건축물 등의 건물번호판은 가로·세로의 길이 각각 20센티미터 이상, 면적은 1,000제곱센티미터 이상으로

- 하며, 길에 접한 건축물 등의 건물번호판은 가로·세로의 길이를 각각 15센티미터 이상, 면적은 500제곱센티미터 이상으로 함
2. 건축물 등의 벽면에 글자(숫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붙이는 경우에는 글자의 가로·세로의 길이가 각각 20센티미터 이상(숫자 “1”의 가로길이는 예외로 한다)으로 함
 3. 옥외광고물에 건물번호판을 포함하여 제작하는 경우에는 표기된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외곽선을 연결한 폐다각형의 내부면적이 제1호에서 정하는 규격 이상으로 함
- ② 건물번호판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건물번호판의 자체 제작·설치) ① 영 제9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사항의 검토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신청인이 건물번호판을 설치하도록 통지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물번호판을 건축물의 주출입구가 있는 위치에 운전자·보행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설치완료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 설치위치 및 방법, 제작·설치비용, 비용의 납부방법(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경우에 한한다), 건물번호판의 교부시기(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등을 안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장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

제9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 ①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의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에게 사업시행을 승인하는 때에는 제2항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시행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과 건물번호 부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 준공예정일(건축물의 경우 임시사용·동별 사용 승인을 포함한다) 90일 이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인가서
2. 사업계획도(축척 3,000분의 1 이상)

③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신청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도로명시설을 자체 제작·설치할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새로이 부여된 도로명 및 건물번호
2. 사업지역에 설치할 도로명시설의 종류, 위치 및 수량
3. 도로명시설의 설치비용·기간
4. 도로명시설을 시장이 설치하도록 할 경우의 비용 납부방법(법 제10조제2항 규정 관련)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제3항에 따라 자체 제작·설치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받은 시행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도로명시설의 직접 설치여부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제10조(도로명시설의 설치 확인) ①시행자가 제9조에 따라 도로명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설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의 각종 개발사업에 관한 준공 신청(건축물의 경우는 임시사용·동별사용 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도로명시설의 설치를 확인한 후 준공처리하여야 한다.

제5장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

제11조(도로명사업에 의한 도로명의 사용의무) 시장이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노선명)은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부여한 도로명의 도로구간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개설된 도로의 도로구간을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는 다른 명칭(노선명)을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도로명 관련 자료의 제출) ①구미시(이하 “시” 라 한다)의 도로·건축물·국토이용계획·지적 등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도로명사업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도로명사업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통보에 따라 정리한 도로명주소 등을 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도로명기본도의 작성) 시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작성·관리하는 도로명기본도에 배경자료(철도, 호수, 하천, 공원, 교량 등을 말한다)와 보조자료(건축물군, 교차로, 지하철·철도역사, 관광지 등을 말한다)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도로명 등의 시스템에 반영) 시장은 도로구간의 현황, 도로별 해당 도로명의 부여·변경사유 및 부여·변경일자 등을 구미시도로명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장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 등

제15조(건물번호판의 설치안내 등) ①시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시설을 일제 조사한 결과, 훼손·망실된 건물번호판이 발견된 때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신청·설치하도록 건

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훼손·망실된 도로명시설을 재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제16조(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①시장은 법 제13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명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사·공단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 관련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명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로명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도로명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도로명시설 일제조사 계획
5. 도로명시설의 훼손·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 도로명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17조(도로명시설의 점검) ①시장은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한 경우 위탁한 상대방(이하 “수탁자”라 한다)과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도로명시설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도로명시설이 훼손·망실되었거나 훼손·망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수탁자의 지도·감독) 시장은 수탁자가 도로명시설을 성실히 유지 관리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7장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

제19조(광고사업자의 선정절차 등) ①시장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시설에 광고를 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2항의 광고사업신청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에 시보·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안내표지판에 대한 광고계획
2. 도로명주소안내도(종이와 전자매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종류, 제작수량
3. 안내표지판의 종류, 제작수량, 설치위치, 규격
4. 광고사업 참가자격
5. 광고사업 신청 장소, 기간, 제출서류(제2항의 서류를 말한다)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라 광고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광고사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안내표지판의 제작·구성계획
2. 자금조달계획 및 광고주 모집계획
3. 안내표지판의 규격, 재질, 디자인 등에 관한 설계도서
4. 그 밖에 광고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2항에 따라 광고사업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광고사업신청서 제출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구미시새주소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광고사업자를 심의한다.

1. 광고사업자의 수행 능력
2. 광고사업 수행의 실현 가능성
3.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안내표지판 구성의 적합성
4. 그 밖에 도로명사업에 대한 기여도 등

④제3항에 따른 광고사업자 선정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별표1과 같이 하고, 배점부여기준은 구미시새주소위원회에서 정한다.

⑤시장은 선정된 광고사업자에게 구미시새주소위원회에서 심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하고, 시보·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후 그 내

용을 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 ①시장은 선정된 광고사업자와 1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광고사업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광고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광고주의 모집방법, 게재할 수 없는 광고물의 범위, 제작·설치된 안내표지판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광고사업자는 광고주를 모집하여 도로명주소안내도와 안내표지판의 제작을 위한 시안을 작성한 후 시장과 협의·확정하여야 한다.

제21조(광고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광고사업자의 광고사업에 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8장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

제22조(도로명주소의 홍보·교육) ①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손수건, 휴대용 화장지, 부채, 자, 저금통, 달력, 접지형 지도, 컴퓨터용 마우스패드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할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②시장은 민방위·예비군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교육 등에 도로명주소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 시장은 도로명주소의 생활화촉진을 위해 법 제22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제반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에 새주소안내도 부착, 새주소안내표지판 설치 등 새주소 안내시설 설치
2. 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 등의 위치표시체계에 도로명주소 방식 도입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도로명주소 생활화 촉진 사업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장 구미시새주소위원회 등

제24조(위원회의 구성) ①영 제26조에 따라 설치되는 구미시새주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도로명사업과 관련된 관계공무원
2. 도로명사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
3. 시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③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로명의 부여·변경(도로구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에 관한 사항
3.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위탁에 관한 사항
4.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도로명주소의 사용촉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로명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27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 소집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도로명사업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②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30조(회의록의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기타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구미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 ③(도로명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도로명사업에 관한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광고사업자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19조제4항 관련)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비 고
계		100	
1. 광고사업자의 수행 능력		15	
	가. 당해 광고사업에 참여할 인력구성	5	
	나. 최근 3년간 영업실적	10	
	- 광고 수행실적	(5)	
	- 기타 영업실적	(5)	
2. 광고사업 수행의 실현 가능성		30	
	가. 제작비용 조달계획의 실현가능성	15	
	나. 광고주 모집방법의 실현가능성	15	
3.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안내표지판 구성의 적합성		30	
	가. 도로명주소안내도의 적합성	15	
	- 안내도 종류별 규격의 적정성	(5)	
	- 광고지면의 비율	(5)	
	- 안내도 구성의 참신성	(5)	
	나. 안내표지판의 적합성	15	
	- 안내표지판 디자인의 참신성	(10)	
	- 안내표지판 구성의 적정성	(5)	
4. 그 밖에 도로명사업에 대한 기여도		25	
	가. 목표대상(인지도 제고)의 적절성	10	
	나. 비용대비 효과성	5	
	다. 안내도 배포 계획의 효율성	10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도로명 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50일
신 청 인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도 로 명	현 행			
	변경희망안	1순위 :		
		2순위 :		
		3순위 :		
변 경 신청사유				
희망안별 부여사유	1순위 :			
	2순위 :			
	3순위 :			
건물번호수				
주소사용자수				
변경 동의자수				
「구미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변경을 신청합니다. 첨부 : 도로명 변경 동의자 명부(뒤쪽의 양식 활용) 부.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				

210×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뒤쪽)

도로명변경 동의자 명부

[illegible]

[별지 제2호서식]

건물번호판 제작·설치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도 로 명				
건물번호				
건 물 번 호 판	규격			
	모양			
	재질			
「구미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건물번호판 자체 제작·설치를 신청합니다. 첨부 : 건물번호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계획서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				

210×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건물번호판 설치 완료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도 로 명				
건물번호				
건 물 번 호 판	규격			
	모양			
	재질			
「구미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건물번호판 설치 완료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건물번호판 설치사진 2매 (근경사진 1매, 건물 1/3이상 포함된 전경사진 1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				

210×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도로명부여 신청서				처리기간
				50일
신청인 (사업시행자)	성명 (사업시행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		
사업명				
토지소재				
인가 내용	사업구분			
	사업기간			
	인가일			
	면적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구미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부여를 신청합니다. 첨부 : 1. 사업인가서 1부. 2. 사업계획도 1부. 년 월 일 신청인(사업시행자) :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				

210×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광 고 사 업 신 청 서				처리기간 32일
신 청 인 (대표자)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		
신청내용		1. 도로명주소안내도 2. 안내표지판		
수 행 능 력	인력구성			
	자산규모			
	최근3년간 수행실적			
	기타 실적			
「구미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 안내도 및 안내표지판 광고사업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첨부 : 1. 도로명주소 안내도 및 안내표지판 제작·구성계획 2. 자금조달계획 및 광고주 모집계획 3. 안내표지판의 규격, 재질, 디자인 등에 관한 설계도서 4. 그 밖에 광고사업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				

210×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도로명시설 광고사업자 관리대장

[illegible]

210×297mm(보존용지(2종) 70g/m²)

참 고 자 료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명사업 촉진과 도로명주소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명사업 촉진과 도로명주소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4조(도로명시설의 광고) ①시장등은 도로명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명시설에 광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시설에 장애가 없는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사업자의 선정과 광고방법 및 광고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비 수입은 도로명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7조(도로명사업 지원 조례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명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명시설의 설치·유지관리·손해배상공제가입·활용 및 홍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다.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도로명의 부여 등) ①시장등은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로명을 부여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새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시장등은 도로명을 부여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지역적 특성, 역사성, 위치 예측성, 영속성, 지역주민의 의견 및 지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시·도지사,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각각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장등 사이 또는 시·도지사 사이에 동일한 도로명을 부여하거나 동일한 도로명으로 변경하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도로명을 도로명판에 표기하는 경우에는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여야 한다.

⑤시장등은 도로명시설의 설치가 완료된 후 3년 이상의 기간으로서 시·군·구 조례(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 도로명주소의 활용도와 편리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해당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자 중에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자가 이미 부여된 도로명의 변경을 요구하는 때에는 해당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자 중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도로명을 변경할 수 있다.

⑥제1항·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도로명의 부여 또는 변경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도로명시설의 제작·설치 및 관리 등) ①시장등은 법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도로명주소가 부여된 도로와 건축물

등에 도로명시설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②2 이상의 관련된 건축물이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 건축물마다 건물번호판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물번호판에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와 상세주소 중 동(棟)번호를 표기한다.

③시장등은 도로명시설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도로명시설이 못쓰게 되거나 분실된 때에는 원인조사 및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도로명시설(운전자에 대한 도로안내를 위하여 「도로법」 등에 따라 설치되는 도로표지를 제외한다)의 종류·규격·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⑤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건물번호판의 규격·색상·부착위치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와 다르게 제작·설치하려는 경우와 옥외광고물에 건물번호판을 포함시켜 제작·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적으로 제작·설치할 수 있다.

제17조(유지관리의 위탁 등) 시장등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위탁대상자를 선정한다

제18조(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 ①법 제9조제2항 및 제14조제3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안내표지판에 게재할 수 있는 광고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명주소안내도의 경우에는 소유자의 성명, 명칭, 주소, 업소명, 전화번호, 자기의 상표 또는 상징형 도안 등
2. 안내표지판의 경우에는 업소의 명칭 또는 상징형 도안

②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광고를 게재한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안내표지판을 제작·설치·배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공

고하여야 한다.

③안내표지판을 이용한 광고는 안내표지판에 붙인 안내도에만 게재하여야 한다.

④광고사업자의 선정을 위한 공고 및 광고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제26조(시·군·구새주소위원회의 설치 등) ①법 제8조 및 제20조에 따른 도로명의 부여, 도로명주소의 고시 및 안내도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등 소속하에 시·군·구새주소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시·군·구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시·군·구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④위원은 도로명사업과 관련되는 기관의 관계공무원과 도로명사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등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⑤시·군·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로명의 부여·변경에 관한 사항
2. 도로명주소의 고시에 관한 사항
3.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위탁에 관한 사항
4.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로명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등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⑥시·군·구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4조 중 "중앙위원회"는 "시·군·구위원회"로, "행정자치부장관"은 "시장등"으로 본다.

⑦시·군·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할 수 있다.